

학 칙

수 원 대 학 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본 대학교에는 교양대학,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ICT융합대학, 건강과학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 국제대학 및 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 미술대학원, 음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고용서비스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을 둔다.

제3조(학생정원 및 전공이수) ① 각 대학의 학과(부)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각 대학 및 학과(부)는 제1항의 학과 및 전공 편성 외에 소정 이상의 인원이 별도의 전공프로그램 이수를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당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 전공명을 학위기에 표시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학과 및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학과 등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와 산업교육특별 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 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명칭 및 정원, 학위는 별표3과 같다.

③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대 학 원

제5조(대학원 학칙 및 학위) 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 미술대학원, 음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금융공학대학원, 고용서비스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의 학칙과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

제6조(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부속기관

중앙도서관, 박물관, 출판부, 학보사, Lab실, 방송국, 보건실, 정보전산원, 직장예비군연대, 고운 미술관, 고운첨단과학기술연구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영자신문사, 전자 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아동가족상담센터, 신뢰성혁신센터, 양성평등센터, 벨칸토아트센터, 기숙사, 체육부, 학생군사교육단, U-city보안감시기술혁신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원화성융합문화센터, 환경안전원,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 뉴메이킹센터, 그린카에너지활용부품센터, 3차원대형부품융합계측지원센터, 화성시창업지원센터, WISE센터, Creative센터, 창업지원단(기업가정신센터, DS&ML센터, 고운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정보보호센터, 교육혁신단(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산학교육지원센터)

2.부설연구소

동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IT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IT환경융합연구센터, 조형연구소, 하천환경기술연구소, U-City연구소,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통계조사연구소, 바이오산업연구소, 금융공학연구소, 고운교양교육연구소, 문화콘텐츠디자인연구소, 융합미디어연구소

3.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국제어학원, 특수교육원(고시원, 한자교육원, 한국어·문화교육원, 영재교육원, 음악영재 아카데미, 미래인재아카데미)

②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운영세칙이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연한

제7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소정의 졸업 학점을 취득한자의 졸업 연한은 3년(6학기)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재학연한) <삭제 2008.12. 1>

제 5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고 따로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6월 말일 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하며 계절학기의 학기구분은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에 설치하며 수업기간은 매 계절학기당 3주 이상 개설한다. 단, 4학년은 3학기제로 유연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무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 주 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 주 수에서 2주 이내를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하기휴가, 동기휴가, 개교기념일, 일요일과 기타 국정 공휴일로 한다.

② 휴업 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6 장 입학 및 전과

제12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증명서 등 전형 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13조(입학시기) 입학허가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학기초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외국에서 초.중.고교 12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5조(편입학 자격) ①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기 전급 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학사 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정원의외로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입학인원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재입학 자격)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원할 때에는 소정의 지원 서류를 심사하여 해당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유급 및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전·편입학 및 재입학허가) 전·편입학 및 재입학은 해당 학과(부)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입학지원 서류)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자는 입학원서와 모집요강에 의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12.26>
2. <삭제 2006.12.26>
3. <삭제 2006.12.26>
4. <삭제 2006.12.26>

② 제출된 소정의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학전형) ① 신입생 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그리고 대학별 고사의 성적을 합산한 전형에 의하되 면접고사, 실기고사, 신체검사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별고사의 성적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특기자의 입학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면접고사, 특기심사를 병과하여 사정한다.
- ③ <삭제 2006.12.26.>

제19조의 2 (선행학습영향평가)

- ① 입학전형을 실시한 후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 위원회)① 대학입학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 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의 2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의 2 (회피 및 제척)

- ① 본교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지인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해관계자가 본교에 지원한 경우 또는 지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원은 이를 문서로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거 신고한 교직원원은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거쳐 입학전형 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한다.

제22조(신상정보) ① <삭제 2006.12.26>

- ② <삭제 2006.12.26>

- ③ 본 대학에 입학한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신상정보를 학교전산망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④ 본 대학에 입학한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전과) ① <삭제 2006.12.26>

- ② 전과의 신청, 자격,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4조(등록) 재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2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제26조(주·야간 교차수강) 주·야간 교차수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7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법정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을 가진 자 또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복무기간에 한함), 유급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장애학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제3항의 2배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임신·출산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년(2학기),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2년(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8조 <삭제 2011.12.14>

제29조 <삭제 2011.12.14>

제30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6. 12. 26>

③ 전역한 예비역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퇴학)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진 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2.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9. 7. 6>
4. 무계출로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5.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7. 제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제 9 장 교과, 수업, 학점 및 졸업

제33조(교과목의 분류)① 각 대학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기초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전공필수 과목은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② 전공이 있는 학부에 소속된 학생은 하나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자유전공학부장(이하 “학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 선택은 자유전공학부내에 설치된 전공 또는 입학 당해년도 편제표에 있는 전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학과, 예체능계열, 폐과된 전공은 선택할 수 없다.

제35조(국내 및 국외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본 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에 국내 및 국외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교육의 이수단위)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간 30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국내·외 창업 및 인턴쉽, 사회봉사활동, 집중수업 및 이동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국내·외 창업 및 인턴쉽,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학기별 이수 학점)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직전 학기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이며 낙제 과목이 없는 자는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제39조(신입생 특별학점취득) ① 각 대학 학과(부)의 1학년으로 신입한 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특별시험을 거쳐 6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각 대학 학과(부)에 입학할 허가 받은 자로서 입학 전 국내·외 대학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 한 경우에는 입학 후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교과목의 이수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에는 학칙 제33조의 2의 이수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34조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40조(재입학자의 학점)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학점을 재사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41조(편입학자의 학점)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의 수학 내용을 참작하여 수료학점 내지 기준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제42조(수료 인정 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제 1 학년 : 36학점 이상
- 제 2 학년 : 65학점 이상
- 제 3 학년 : 104학점 이상
- 제 4 학년 : 130학점 이상

제43조(학점인정) ①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따로 정한다.

③ 군복무 중인 자가 방송통신 등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이내에서 인정하며, 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한다. 등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본 대학교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강좌 및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사회봉사활동, 국내·외 인턴십 등에 대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 2 (학·석사 연계과정)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43조의 3 (졸업요건을 위한 전공이수) 2016년도 입학생부터는 전공심화,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1개 이상의 과정(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편입학생은 제외한다.

제44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추가학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학과별 졸업이수 학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유급)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할 때에는 학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졸업과 학위)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인증 및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별표2의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졸업인증 및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47조(명예졸업) ① 문화·예술, 기타 및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에게는 명예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및 절차)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본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 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에서 8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른 전공 학사의 경우 4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본교 총장명의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학점은행제의 학생선발·모집·입학·수강신청·장학금 및 등록금,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삭제

⑦학점은행제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V,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3. 학위수여 절차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칙 별표2, 학위증은 평생교육원규정 <별표1>와 같다.

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V,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3. 학위수여 절차에 의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양식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학위수여) ① 삭제

② 삭제

제50조(복수학위) 본 대학교와 국외대학간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양교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1조(공동명의 학위) 본 대학교와 국외대학간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본교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있고 이를 이수할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2조(조기졸업) 6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53조(후기졸업) 제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 10 장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및 융복합 전공

제54조(부전공) 재학 중 특정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과목을 소정 절차를 밟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제55조(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①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신청한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1. 복수전공, 다전공 : 2개 이상의 전공
2.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학과가, 학과와 학과 또는 전공과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3. 융복합전공 :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하여 전공간 또는 학문의 영역간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융합하여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인정을 받은 후 전공을 이수하게 되는 전공

제56조(세칙) 부전공 및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등에 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시험, 성적, 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제57조(시험) 시험은 각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출석)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성적을 낙제로 한다.

제59조(성적평가) 학업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등급으로 표시하고 출석, 평소 성적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제60조(성적분류)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실 점	등 급	평 점
95 - 100	A+	4.5
90 - 94	A0	4.0
85 - 89	B+	3.5
80 - 84	B0	3.0
75 - 79	C+	2.5
70 - 74	C0	2.0
65 - 69	D+	1.5
60 - 64	D0	1.0
59점이하	F	0

1. 학업 성적이 D0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한다.
2.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교과목에 대하여는 급제(Pass)와 낙제(Fail)로 구분하며, 성적평점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3. 성적평가가 상대평가인 경우 실점과 등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1조(성적경고) ①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경우 또는 F등급이 6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경고를 한다.

② <삭제 2009. 12. 16>

제62조(인정점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중간 또는 기말 시험 중 결시한 과목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시험 시행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 그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63조(학점의 취소) ①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졸업생으로서 제1항의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 학위를 박탈한다.

제64조(종합시험) 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 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하는 최종학기 소정 기일 내에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 종합시험 등 다른방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정한 일정자격 요건 취득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 12. 26>

③ 졸업 논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포상과 징계

제6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

제67조(징계처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배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문서를 탈취, 위조, 변조한 자
2. 성희롱, 성폭행, 상해행위 및 난폭행위 등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교직원에게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패덕행위를 한 자
4. 학교행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학교시설물을 무단점거, 점유한 자
5. 도서, 기물 및 기타 학교재산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탈취, 절취한 자
6.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7.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자

② 징계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납입금

제68조(납입금)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습·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

④ 입학(신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제1항의 납입금 이외에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9조(납입금의 감면 및 반환) ①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 한다.

②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신입생은 입학일, 재학생은 당해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70조(납입금 반환금지) <삭제 2006.12.26>

제 14 장 장 학 금

제71조(장학금)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장학금 급여의 정지)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중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미급된 장학금을 급여치 않는다.

제73조(세칙) 장학금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74조(입학) ①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으로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위탁생에게는 제 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이 허가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력을 평가한 후 정원 외에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5조(과목이수)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그 과목의 수업시간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 기타 사정에 급제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과목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6조(편입학) 외국인 특별학생을 정규학생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편입학 규정에 의한다.

제77조(제명) 위탁생은 수업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78조(준용규정) 위탁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 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6 장 공개강좌 및 시간제등록생

제79조(공개강좌 개설) 실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80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의 2(시간제등록생) ①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②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 ③ 시간제등록생은 당해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 ④ 선발방법은 출신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 ⑤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학생활동

제81조(총학생회) 수원대학교의 영원한 발전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격 함양을 목적으로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총학생회 회비) 본교 재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83조(학생 단체의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 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4조(학생지도) ① 학업 및 학생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5조(장애학생 편의지원) 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전담부서 및 지원 방안은 따로 정한다.

제86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87조(집회 및 단체(행사)활동 사전신고)

① 학생이 교내의 집회 및 단체(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 학부(장) 또는 관련 지도교수, 학생회장을 책임자로 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①항에 의거하여 인권침해 사고 발생시 관련 책임자는 교원징계규정, 학생상벌내규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88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8 장 학군사관 후보생과정

제89조(학군사관후보생과정) ① 장교후보생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에 의거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단” 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학군단의 교육과정, 조직,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9 장 직제 및 산학협력단

제90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91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는 정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장 교원

제92조(교수회) 본교의 교수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3조(교원의 임면) 교원의 구분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4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장 위원회

제95조(교무위원회) 본교의 교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5조의 2 (대학평의회) ①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평의회의 평의원 자격기준, 위원위촉 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5조의 3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대학등록금 심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5조의 4(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6조(제 위원회)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22 장 학칙개정

제97조(학칙개정) 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은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공고하면서 의견을 수렴, 조정한 후 대학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제 23 장 기 타

제98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2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4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졸업정원 감축 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후 졸업 정원이 감축된 학과의 졸업 정원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축되기 이전의 졸업 정원을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199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 ⑤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된 학과에 대하여는 변경학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과에 재적 중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되, 해당 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학부 해당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부 모집단위 주간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1999학년도부터 일부 야간 모집단위가 주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야간 모집단위로 입학한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주간 학과 또는 학부의 전공으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전공 배정이 된 자가 이 개정학칙 시행학년도나 그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소속은 각 전공이 학과(부)로 변경된 학과(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전공 배정이 된 자가 이 개정학칙 시행학년도나 그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소속은 각 전공이 학과(부)로 변경된 학과(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12. 26 공포)
- ② (전과에 대한 경과규정) 학칙 제21조의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학위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아동가족복지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학위명은 2007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11. 1 공포)
- ② (학위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위명은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 12. 1 공포)
- ② (경과조치) 학칙 제 8조 및 제60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 5. 25 공포)
- ② (경과조치) 학칙 제46조 및 제65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 7. 6 공포)
- ② (경과조치) 학칙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③ (일부 모집단위 주간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부터 일부 야간 모집단위가 주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야간 모집단위로 입학하여 휴학 후 복학할 경우에는 주간 학과로 복학한다.
- ④ (학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에서 학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학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 학부에 재적 중 휴학 또는 제적후 복학,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부 해당 전공과 관련된 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 12. 21. 공포)
- ② (경과조치) 학칙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61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 8. 27. 공포)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학칙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③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인터넷정보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보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학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③ (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무도체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체육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부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된 학과에 대하여는 변경학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과에 재적 중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 ③ (학위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학위명은 201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개발협력학과는 2015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부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된 학과에 대하여는 개정학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과에 재적 중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되, 해당 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학부 해당 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 ③ (학과신설) 개정학칙 제3조 제①항 ‘별표1’의 융합문화대학 문화예술학부 문화컨텐츠테크놀러지 전공은 신설 전공으로, 본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 다전공을 이수할 수 없으며, 타전공 학생이 본 전공을 복수전공할 수 없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학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18학년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학과	전공명	입학정원	비고
인문사회대학 (324)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사학	50	
	외국어학부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139	
	법·행정학부	법학 행정학	6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행정학과(야)		30	야간
경상대학 (240)	경제학부	경제금융 국제개발협력	60	
	경영학부	경영 회계 글로벌비즈니스	120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외식경영 관광경영	60	
공과대학 (625)	바이오화학산업학부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공학 및 마케팅 융합화학산업	80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건설환경공학 환경에너지공학	105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건축학 도시부동산학	80	
	산업 및 기계공학부	산업공학 기계공학	90	
	전자재료공학부	전자재료공학 전자물리	70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 전자공학	100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100	

단과대학	학부/학과	전 공 명	입학 정원	비 고
ICT융합대학 (290)	데이터과학부		100	
	컴퓨터학부	컴퓨터SW 미디어SW	95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 정보보호	95	
건강과학대학 (261)	간호학과		41	
	아동가족복지학과		40	
	의류학과		35	
	식품영양학과		40	
	스포츠과학부	체육학 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105	
미술대학 (195)	조형예술학부	회화(서양화, 한국화)	60	
		조소	30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0	
		패션디자인	35	
		공예디자인	30	
	음악대학 (170)	작곡과		20
성악과		30		
피아노과		40		
관현악과		50		
국악과		30		
융합문화 예술대학 (90)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25	
		연극	25	
		무용	15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25	
국제대학 (1)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	1	
		연기·연예		
교양대학	교양대학		-	
합 계			2,196	

2017학년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학과	전공명	입학정원	비고
인문사회대학 (330)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사학	55	
	외국어학부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140	
	법·행정학부	법학 행정학	65	
	행정학과(야)		30	야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경상대학 (290)	경제학부	경제금융 국제개발협력	60	
	경영학부	경영(생산/MIS,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조직 트랙) 회계 글로벌비즈니스	130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외식경영 관광경영	60	
	응용통계학과		40	
공과대학 (630)	바이오화학산업학부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공학 및 마케팅 융합화학산업	90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건설환경공학 환경에너지공학	105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건축학 도시부동산학	80	
	산업 및 기계공학부	산업공학 기계공학	90	
	전자재료공학부	전자재료공학 나노재료	70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 전자공학	100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95	

단과대학	학부/학과	전 공 명	입학 정원	비 고
IT대학 (230)	수학과		30	
	컴퓨터학부	컴퓨터SW 미디어SW	100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 정보보호	100	
건강과학대학 (271)	간호학과		41	
	아동가족복지학과		40	
	의류학과		40	
	식품영양학과		40	
	스포츠과학부	체육학 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110	
미술대학 (190)	조형예술학부	회화(서양화, 한국화)	60	
		조소	30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0	
		패션디자인	30	
		공예디자인	30	
음악대학 (170)	작곡과		20	
	성악과		30	
	피아노과		40	
	관현악과		50	
	국악과		30	
융합문화 예술대학 (85)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25	
		연극	30	
		무용	15	
		문화컨텐츠테크놀러지	15	
교양대학	교양대학		-	
국제대학	외국인 특별학생 자유전공학부		정원외	
합 계			2,196	

2016학년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학과	전 공 명	입학정원	비 고
인문사회대학 (335명)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30	
		사학	25	
	외국어학부	영어영문학	40	
		프랑스어문학	20	
		러시아어문학	20	
		일어일문학	30	
		중어중문학	30	
	법학과		35	
	행정학과		30	
	언론정보학과		45	
행정학과		30	야 간	
경상대학 (290명)	경제학부	경제금융학	40	
		국제개발협력학	20	
	경영학부	경영학	50	
		글로벌비즈니스학	40	
		회계학	40	
		응용통계학	40	
호텔관광학부	호텔외식경영학 관광경영학	60		
융합과학대학 (220명)	기초과학부	수학	30	
		물리학	20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	25	
		화학	30	
		생명공학	35	
	생활과학부	의류학	40	
식품영양학		40		
공과대학 (520명)	토목공학과		50	
	환경에너지공학과		55	
	건축도시학부	건축학	45	
		도시부동산학	35	

단과대학	학부/학과	전 공 명	입학정원	비 고
공과대학	기계산업공학부	기계공학	50	
		산업공학	40	
	전기전자공학부	전자재료공학	50	
		전기공학	50	
		전자공학	50	
	화공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50	
화학공학		45		
IT대학 (200명)	컴퓨터미디어학부	컴퓨터학	60	
		정보미디어학	40	
	정보통신보안학부	정보통신공학	50	
		정보보호학	50	
체육의료복지대학 (201명)	스포츠과학부	체육학	90	
		레저스포츠		
		스포츠건강관리학	30	
간호학과	41			
아동가족복지학과	40			
미술대학 (190명)	조형학부	한국화	30	
		서양화	30	
		조소	30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	40	
		패션	30	
		공예	30	
음악대학 (240명)	음악학부	작곡	20	
		성악	30	
		피아노	40	
		관현악	45	
		국악	30	
	공연영상학부	영화영상	25	
		연극	30	
		무용	20	
교양대학	교양대학	-		
국제대학	외국인 특별학생 자유전공학부	정원외		
합 계			2,196	

2015학년도 입학정원

대 학 (총인원)	학 과(부)	입학정원	비 고
인문대학 (295)	국어국문학과	35	
	영어영문학과	55	
	사학과	30	
	프랑스어문학과	25	
	러시아어문학과	25	
	일어일문학과	35	
	중어중문학과	35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 연극	25 30
법정대학 (160)	법학과	35	
	행정학과	45	
	언론정보학과	50	
	행정학과	30	야 간
경상대학 (293)	경제·금융학과	45	
	경영학과	60	
	글로벌비즈니스학과	45	
	회계학과	45	
	국제개발협력학과	20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외식경영	78
자연과학 대 학 (241)	수학과	35	
	물리학과	25	
	생명과학과	30	
	화학과	35	
	통계정보학과	40	
	생명공학과	35	
	간호학과	41	
공과대학 (550)	토목공학과	50	
	건축공학과	50	
	산업공학과	40	
	전자재료공학과	55	
	도시·부동산개발학과	40	
	기계공학과	55	
	신소재공학과	50	
	전기공학과	50	
	화학공학과	50	
	환경에너지공학과	60	
	전자공학과	50	

대 학 (총인원)	학 과(부)	입학정원	비 고
IT 대학 (205)	컴퓨터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50	
	정보보호학과	50	
	정보미디어학과	45	
생활과학 대 학 (125)	아동가족복지학과	45	
	의류학과	40	
	식품영양학과	40	
체육대학 (150)	체육학부	체육학	95
		사회체육학	
	무용학과	25	
미술대학 (215)	조형예술학부	한국화	30
		서양화	40
		조 소	30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5
		패션디자인	35
		공예디자인	35
음악대학 (170)	작곡과	20	
	성악과	30	
	피아노과	40	
	관현악과	50	
	국악과	30	
계		2,404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 학 (총인원)	학 과(부)	입학정원	비 고
인문대학 (355)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70	
	사학과	35	
	프랑스어문학과	30	
	러시아어문학과	30	
	일어일문학과	40	
	중어중문학과	40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 연극	30 40
법정대학 (180)	법학과	40	
	행정학과	50	
	언론정보학과	60	
	행정학과	30	야 간
경상대학 (336)	경제·금융학과	50	
	경영학과	70	
	글로벌비즈니스학과	50	
	회계학과	50	
	국제개발협력학과	20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외식경영 테마파크	96
자연과학 대 학 (266)	수학과	40	
	물리학과	35	
	생명과학과	35	
	화학과	40	
	통계정보학과	40	
	생명공학과	35	
	간호학과	41	
공과대학 (570)	토목공학과	50	
	건축공학과	50	
	산업공학과	40	
	전자재료공학과	60	
	도시·부동산개발학과	50	
	기계공학과	60	
	신소재공학과	50	
	전기공학과	50	
	화학공학과	50	
	환경에너지공학과	60	
	전자공학과	50	

대 학 (총인원)	학 과(부)		입학정원	비 고
IT 대학 (215)	컴퓨터학과		65	
	정보통신공학과		50	
	정보보호학과		50	
	정보미디어학과		50	
생활과학 대 학 (130)	아동가족복지학과		50	
	의류학과		40	
	식품영양학과		40	
체육대학 (160)	체육학부	체육학	100	
		사회체육학		
	무용학과		30	
스포츠건강관리학과		30		
미술대학 (230)	조형예술학부	한국화	30	
		서양화	40	
		조 소	30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50	
		패션디자인	40	
		공예디자인	40	
음악대학 (170)	작곡과		20	
	성악과		30	
	피아노과		40	
	관현악과		50	
	국악과		30	
계			2,612	

(별표1-1) <삭제2006.12.26>

(별표1-2) <삭제2006.12.26>

(별표1-3) <삭제2006.12.26>

(별지서식1)

제 호

THE UNIVERSITY OF SUWON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전 공 :

복수전공:

부 전 공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위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원대학교총장

(별표2)

2018학년도 신입생

학과 및 전공명	학 위 명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사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문 학 사
법학	법 학 사
행정학 행정학과(야)	행 정 학 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 학 사
경제금융	경 제 학 사
국제개발협력	국 제 개 발 협 력 학 사
경영영계 글로벌비즈니스	경 영 학 사
호텔관광학부	관 광 학 사
나노재료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공학 및 마케팅 융합화학산업	이 학 사
간호학과	간 호 학 사
건설환경공학 환경에너지공학 건축 도시부동산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전자재료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컴퓨터SW 정보통신 정보보호 미디어SW 데이터과학부	공 학 사

학과 및 전공 명	학 위 명
아 동 가 족 복 지 학 과 의 류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생 활 과 학 사
체 육 학 레 저 스 포 츠 운 동 건 강 관 리	체 육 학 사
무 용	무 용 학 사
영 화 영 상 연	연 극 영 화 학 사
조 형 예 술 학 부 디 자 인 학 부	미 술 학 사
작 성 곡 피 아 노 관 현 악 국 악	음 악 학 사
문화컨텐츠테크놀러지	문 학 사
자 유 전 공 학 부	국 제 학 사

2017학년도 신입생

학 과 및 전 공 명	학 위 명
국 어 국 문 학 영 어 영 문 학 사 프 랑 스 어 문 학 러 시 아 어 문 학 일 어 일 문 학 중 어 중 문 학	문 학 사
법 학	법 학 사
행 정 학	행 정 학 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 학 사
경 제 금 융	경 제 학 사
국 제 개 발 협 력	국 제 개 발 협 력 학 사
경 영 계 글 로 벌 비 즈 니 스	경 영 학 사
호 텔 관 광 학 부	관 광 학 사
수 노 재 료 학 바 이 오 싸 이 언 스 바이오회학 및 마케 용 합 화 학 산 업	이 학 사
응 용 통 계 학 과	통 계 학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사
건 설 환 경 공 학 환 경 에 너 지 공 학 건 축 학 도 시 부 동 산 학 산 업 공 학 기 계 공 학 전 자 재 료 공 학 전 기 공 학 전 자 공 학 신 소 재 공 학 화 학 공 학 컴 퓨 터 S W 정 보 통 신 정 보 보 호 미 디 어 S W	공 학 사

학과 및 전공명	학위명
아동가족복지학과 아동가족복지학 전공(학점은행제)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과학사
체육학 체육학 전공(학점은행제) 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체육학사
무용	무용학사
영화영상 연극	연극영화학사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미술학사
작곡 성악 피아노 피아노학 전공(학점은행제) 관현악 국악	음악학사
문화컨텐츠테크놀러지	문학사
자유전공학부	국제학사

2016년도 신입생

학 과 및 전 공 명	학 위 명
국 어 국 문 학 영 어 영 문 학 사 프 랑 스 어 문 학 러 시 아 어 문 학 일 어 일 문 학 중 어 중 문 학	문 학 사
법 학 과	법 학 사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사
언 론 정 보 학 과	문 학 사
경 제 · 금 융 학	경 제 학 사
경 영 학 회 계 학 글 로 벌 비 즈 니 스 학	경 영 학 사
국 제 개 발 협 력 학	국 제 개 발 협 력 학 사
호 텔 관 광 학 부	관 광 학 사
수 리 학 물 리 과 학 생 명 공 학 생 명 공 학 화 공 학	이 학 사
응 용 통 계 학	통 계 학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사
토 목 공 학 과 건 축 공 학 산 업 공 학 전 자 재 료 공 학 도 시 부 동 산 개 발 학 기 계 공 학 신 소 재 공 학 화 학 공 학 전 기 공 학 전 자 공 학 환 경 에 너 지 공 학 과 컴 퓨 터 학 정 보 통 신 공 학 정 보 보 호 학 정 보 미 디 어 학	공 학 사

학 과 및 전 공 명	학 위 명
아 동 가 족 복 지 학 과 의 류 학 식 품 영 양 학	생 활 과 학 사
체 육 학 스 포 츠 건 강 관 리 학	체 육 학 사
무 용 학	무 용 학 사
연 극 영 화 학	연 극 영 화 학 사
조 형 예 술 학 부 디 자 인 학 부	미 술 학 사
작 성 곡 피 아 노 관 아 국 악	음 악 학 사
자 유 전 공 학 부	국 제 학 사